

- 아. 건축조례로 정하는 창고·차고·작업장 등의 기계보호를 위한시설 및 공장 부지내 소규모 천막구조의 건축물과 첨단산업공장의 생산제품 및 자재 보관을 위한 창고용 경량철골조의 건축물을 가설건축물로 정함.(안 제8조)
- 자. 건축물의 사용 승인시 관리자가 작성한 완료보고서로 사용승인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대수선에 한하도록 개정 함.(안 제9조)
- 차.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가설건축물을 신설 함(안 제9조의2)
- 카.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범위, 대행자의 지정, 검사조서의 기록방법, 수수료의 청구·지급내용 및 신청서식 등을 개정함.(안 제10조)
- 타. 건축물의 유지·관리 건축물을 구체적으로 정함.(안 제11조)
- 파. 대지안의 조경 등을 조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신설함. (안 제12조)
- 하. 식재 등 조경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식재토록 개정함.(안 제13조)
- 거. 연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너비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신설 함.(안 제13조의2)
- 너. 사실상 통행로에 대한 도로의 지정·폐지 또는 변경절차를 개선 함.(안 제14조)
- 더.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지하층을 제외토록 단서조항을 신설 함.(안 제26조)
- 러. 맞벽 건축할 수 있는 도로너비를 20미터로 확대하고, 건축물의 용도, 층수 등을 정함.(안 제27조)
- 머.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에서 10미터 이내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전면도로의 경계선에서 적용한 것을 중심선으로 적용하도록 개정 함.(안 제28조)
- 버.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완화대상 건축물을 정하고, 공동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띄어야 하는 거리 규정을 신설함. (안 제29조)
- 서.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, 공개공지 기준의 위반사항 추가 등 일부내용을 수정 및 신설함.(안 제39조)
- 어. 옹벽 및 공작물의 높이가 6미터 이상일 경우 공작물로 준용토록 구체화함.(안 제40조)

저. 조례개정에 따라 각종 별표에 대하여 정비 및 신설 함.(안 별표 1에서 별표 5까지)

처. 각종 신청서 서식을 정비 및 신설 함.(안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4호 서식까지)

4. 참고사항

가. 입법예고

- 고성군 공고 제2010-16호(2010.1.7~1.26)

- 제출의견 : 없음.

나. 관련법령 및 근거

- 건축법

다. 예산조치 :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

라. 규제심사 : 해당없음.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조례 개정안은 건축법 개정(2008. 3. 21)과 같은법 시행령 개정(2008.10.29), 주택법 개정(2009.5.4) 등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, 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」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, 건축 관련 민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

○ 문 : 가설 건축물은 건폐율에 포함 안되니까?

● 답 : 예

7. 토 론 : 없음

8. 심사결과 :

○ 2010. 3. 3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